

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도로관리과)

제출일 : 2022. 7.

1. 제안이유

-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상위법령 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우리 시 자치 조례와 상치하여 민원불편이 있어 상위법령 조문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반환 기준액 변경(안 제6조제1항)
- 점용료 등의 감면 조항 구분 신설(안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) 및 감면요금 적용(안 제7조제2항제2호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소병찬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경우 법 개정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경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
 - ※ 안 제6조1항관련 소액점용료 및 변상금의 제외 및 반환 기준금액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「도로법 시행령」이 2017년 개정되면서 기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변경됨
- 조례안 제7조제1항은 법 제68조의 내용을 담고있으나, 법 제68조제9호의 내용이 빠져있으며, 조례안 제7조제1항제5호가 인용하고 있는 「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2조제5호는 2017년 개정되면서 현재는 없어진 조항임.

- 검토결과 조례안 제7조제2항은 시행령 제73조제3항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관련법의 조항을 인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

제7조(점용료등의 감면) ①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다.